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

☐방문요양 ☒방문목욕

아래 당사자 (갑, 을, 병)는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목욕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.

계약당사자				
수급자 (갑)	성 명	김00	등 급 (인정번호)	3등급 (L23*****)
	주민등록번호	30****-*****	연락처	
	주 소			
	기 타	☒ 15%(일반) ☐ 9%경감 ☐ 6%경감 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		
제공자 (을)	센터명	영주돌봄노인복지센터	시설종류	재가장기요양기관/방문목욕
	센터장 성명	(인)	연락처	054.637.8585
	주 소			
보호자 (병)	성 명	(인)	관 계	‘갑’ 의 ()
	생년월일		연락처	
	주 소			

구분	급여종류	횟수	장기요양급여비용(원)	본인부담금
개인별장기요양이용 계획 및 비율	방문목욕	월 4회	194,760	29,214
	합계		194,760	29,214
이용시간	방문목욕	이용일 □월~금 일정변경가능	이용시간: ☒ 매주 ☐ 격주 ☐ 매월 09:00 ~ 1*:00	

본인부담금 납부계좌: 농협 30*****

제1조(목적)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제2조(계약기간)

- ① 계약기간은 2024년 1월 **일부터 2025년 1월 **일까지로 한다. 단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전 까지 쌍방이 해지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.
-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제3조(이용료 납부)

- ① 방문목욕 등급별 월 한도액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2,306,400	2,083,400	1,485,700	1,370,600	1,177,000	657,400

② 방문목욕 본인부담금 기준(별표1)

방문당 시간	수가(원)	본인부담금 15%	본인부담금 9%	본인부담금 6%	본인부담금 0%
차량(차량)	86,480	12,970	7,780	5,180	0
차량(가정)	77,970	11,690	7,010	4,670	0
차량미이용	48,690	7,300	4,380	2,920	0

③ “을”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익월 5일 이내 정산하고, “갑”(또는 “병”)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.

④ “갑”은 매월 이용료를 15일까지 납부해야하며, 계좌이체, 현금납부 등으로 할 수 있다.
(단.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.)

제4조(급여범위)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2명 1조 “갑”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.

제5조(급여이용 및 제공)

① “을”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“갑”의 욕구평가내용을 토대로 장기요양급여 이용(제공)계획을 수립한다.

② “갑”의 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.

구분	이용일	이용시간
이용 시간 (1)	☒ 월 ☒ 화 ☒ 수 ☒ 목 ☒ 금 ☒ 토 ☐ 일 일정변경가능	오전 **시 00분~ 오후 **시 00분

※ 요일에 따라 이용 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 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

※ ‘갑’ 또는 ‘병’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 시작 최소 1시간 전에 ‘을’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.

③ ‘을’의 방문목욕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.

구분	월	화	수	목	금	토	일	비고
이용시간1	주 1회 이상							

④ 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’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‘을’은 30%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
⑤ 야간(18:00~22:00), 심야(22:00~06:00)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‘을’은 야간 20%, 심야 30%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
⑥ 야간·심야·휴일·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.

⑦ ‘을’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‘갑’(또는 ‘병’)과 협의하여 당월 말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.

제5조(계약자 의무)

① ‘갑’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월 이용료 납부
2. 방문목욕급여 범위내 급여이용

3.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
 4. 기타 ‘을’ 과 협의한 규칙 이행
- ② ‘을’ 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1. 방문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
 2. 급여제공 중 ‘갑’ 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‘병’ 에게 통보
 3. 급여제공시간에 ‘갑’ 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
 4. 급여제공 중 알게 된 ‘갑’ 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
(단,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)
 5. 이용상담,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
 6.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
 7. 기타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의 요청에 협조
- ③ ‘병’ 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1. ‘갑’ 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 2. ‘갑’ 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
 3.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‘을’ 에게 통보
 4. ‘갑’ 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‘을’ 에게 통보
 5. 기타 ‘을’ 의 협조요청 이행

제6조(계약해지 요건)

- ①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‘을’ 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 2. 제3조의 방문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3. 제4조 제2항의 방문목욕급여 제공시간을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의 동의 없이 ‘을’ 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
 4. 기타 ‘갑’ 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② ‘을’ 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‘갑’ (또는 ‘병’)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 2. ‘갑’ 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 3. ‘갑’ 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써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 4. ‘갑’ 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 5.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‘갑’ 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
제7조(계약의 해지)

- ①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은 제6조 제1항의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.
- ② ‘을’ 은 제6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‘갑’ 과 ‘병’ 에게 통보하고 충분히

설명해야 한다.

제8조(이용료 납부)

- ①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- ② ‘을’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에 정산하고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에게 3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.
- ③ ‘갑’은 매월 이용료를 **농협은행으로 15일 이전에 납부한다**. 다만,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.
- ④ ‘을’은 ‘갑’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.

제9조(재계약)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.

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2.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
3.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
4. 기타 ‘갑’과 ‘을’이 필요한 경우

제10조(건강관리)

- ① ‘을’은 ‘갑’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**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**.
- ② ‘을’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목욕급여 제공도중 ‘갑’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제11조(위급 시 조치)

- ① ‘을’은 방문목욕급여 제공시간에 ‘갑’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‘병’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‘병’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. 다만,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‘갑’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‘을’은 즉시 ‘병’에게 통보한다.

제12조(개인정보 보호의무)

- ① ‘갑’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- ② ‘을’은 ‘갑’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
- ③ ‘을’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‘갑’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.
- ④ ‘을’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‘갑’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.
- ⑤ ‘을’은 ‘갑’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.

제13조(기록 및 공개) ‘을’은 ‘갑’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,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이 요구 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4조(배상책임)

- ① ‘을’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.
 1. 장기요양요원(또는 ‘을’)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‘갑’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

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
2. 장기요양요원(또는 ‘을’)의 학대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)로 인하여 ‘갑’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,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은 ‘을’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
1.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

2. ‘을’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
3.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
4. ‘갑’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
제15조(기타)

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.

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‘갑’ (또는 ‘병’)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 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.

202*년 *월 **일

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‘갑’ 과 ‘병’에게 제공하였습니다.

‘을’ 센터장 (서명 또는인)

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.

‘갑’ 이용자 (서명 또는 인)

‘병’ 대리인(보호자) (서명 또는인)

장기요양급여 이용(제공) 계획서

○ 성 명 : 김 0 0

○ 주 소 :

○ 급여종류 : ☐ 방문요양 ☒ 방문목욕 ☐ 방문간호

☐ 주·야간보호 ☐ 단기보호

2025년 01월 01 ~ 2000년 00월 00일 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(제공)
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.

일자	요일	이용 여부	일자	요일	이용 여부	일자	요일	이용 여부
1	월	○	11	목	○	21	일	X
2	화	○	12	금	○	22	월	○
3	수	○	13	토	○	23	화	○
4	목	○	14	일	X	24	수	○
5	금	○	15	월	○	25	목	○
6	토	○	16	화	○	26	금	○
7	일	X	17	수	○	27	토	○
8	월	○	18	목	○	28	일	X
9	화	○	19	금	○	29	월	○
10	수	○	20	토	○	30	화	○
						31	수	○

※ 기타 : 기본 월요일~토요일까지

등급에 따라 근무일수는 조절가능합니다

※ 예) 이용(○), 미이용(×)

※ 공휴일과 주말서비스 필요시 이용자(보호자)와 요양보호사가 합의하여 센터에 통보한 후 이용 가능 합니다.

2025년 1월 **일

이 용 자(보호자) : (인)

영주돌봄노인복지센터장 : (인)

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 2025.1.1.적용

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변경 전	2,069,900	1,869,600	1,455,800	1,341,800	1,151,600
변경 후	2,306,400	2,083,400	1,485,700	1,370,600	1,177,000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○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분 류(60분 기준)	금액(원)	본인부담금 15%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내 목욕)	86,480	12,970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내 목욕)	77,970	11,690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	48,690	7,300

※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,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%를 산정한다.
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구 분	재가급여
일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(하위소득 1~4위, 만성질환자) 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6% ~ 9%

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

- 성 명 : 김 * *
- 주 소 : 경상북도 * *
- 급여종류 : ☐ 방문요양 ☒ 방문목욕 ☐ 방문간호
☐ 주·야간보호 ☐ 단기보호

2024년 01월 01일 ~ 20**년 00월 00일 장기요양급여 이용(제공)
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.

- 이용비용 -

월이용한도액		원		
급여종류	급여수가	서비스횟수	장기요양 급여비용	본인부담금
방문목욕		월1회	48,690	7,300
합계			48,690	7,300

※ 본 세부내역은 계약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실제
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2025년 00월 00일

이 용 자(보호자) : (인)

영주돌봄노인복지센터장 : (인)

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
성 명 : 김00 (생년월일 : 1111. 00. 00)

주 소 :

1. 수집 및 이용목적

본 목적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행복한 방문
요양센터내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· 보호하기 위하여 수집한다.

2. 수집대상정보

- ☐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
- ☐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
- ☐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필요한 정보
- ☐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

3. 수집정보의 활용범위

- ☐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
- ☐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
- ☐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제공
- ☐ 장기요양계획, 욕구조사,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

4. 수집항목

- ☐ 표준장기요양계획서, 장기요양인정서, 대상자 및 보호자개인정보

5.수집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
- ☐ 장기요양급여계약시작일 ~ 이용종료일까지로 한다.
- ☐ 이용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고 폐기처분한다.
- ☐ 이용 해지는 이용 중단 및 사망 시 종결 처리 한다.
- ☐ 대상자 관련 서류는 본 센터 내 서류함에 보관하며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

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025년 00월 00일

이 용 자(보호자) : 김 0 0 (인)